

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1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09.
제출자 : 충주시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존속기한 명시 및
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(안 제9조의2)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의 : 해당없음
- 라. 기타 :
 - 입법예고(2011. 8. 5. ~ 2011. 8. 26)결과 : 의견없음

충주시 조례 제 호

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중,고등학교”를 “중 · 고등학교”로, 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”를 “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”으로, “지급에 관하여”를 “지급에”로 한다.

제2조 제1호 중 “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”을 “란 「국민기초 생활 보장법」에 따른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, “5천제곱미터미”를 “5천제곱미터 미”로, “영세어민의 경우 소형양어장(3천300제곱미터미만을 말함)경영자나 소형어선(2톤미”를 “영세어민은 소형양어장(3천300제곱미터 미만을 말함)경영자나 소형어선(2톤미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외의 본문 중 “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”을 “따라 장학금을 지급받”로 하고 “각호와”를 “각 호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당해 연도”를 “해당연도에”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,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”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“수급권자”를 말한다. “영세농어민”이라 함은 영세농민의 경우 경지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의 소유농가를 말하며, 영세어민의 경우 소형양어장(3천 300제곱미터미만을 말함)경영자나 소형어선(2톤미만의 어선을 말함)을 이용한 어로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 <p>제3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국가·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~ 2. (생략)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중 당해 연도 시단위 이상 각종대회에서 수상한 자 또는 선행 및 효행으로 표창을 받은 자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 신 설 >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중 · 고등 학교 ----- 저 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----- 지급에 -----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1. ----- 이란 「국민기 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----- ----- 2. ----- 이란 ----- 5천제곱미터 미 ----- 영세어민의 경우 소형양어장(3천300제곱미터 미만을 말 함)경영자나 소형어선(2톤 미만의 어선 을 말함) -----</p> <p>제3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----- 따라 라 장학금을 지원받 ----- ----- 각 호와 ----- ----- 1. · 2 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해 당연도에 ----- -----</p> <p>제9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